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주요 질의응답

「'25년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관련 주요 질의응답입니다.

2025. 2.

[사업 신청 및 문의처]

1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사업 신청은 K-스타트업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 완료 여부 확인은 K-스타트업 누리집 → '사업 신청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업 신청을 위해 K-startup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접수 마감일 이전에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	--

참고 사항	* 신청 경로 : ① K-스타트업 접속 검색창에 'k-startup.go.kr' 또는 '창업지원포털' 검색 ② 사업신청 K-스타트업 로그인 사업공고(모집중) 공고선택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③ 사업 신청 확인 K-스타트업 로그인 사업 신청관리 사업 신청 사업 신청내역조회
-------	---

2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은 K-스타트업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며,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단,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	---

3 업무 담당자 ID로 사업을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 시에는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본인 ID를 통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4

창업여부 기준표에서 이종업종과 동종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세분류→일치 시 동종업종', '세세분류→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산업분류코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주업종코드는 '국세청 MY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참고 사항

* 확인 경로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경제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용안내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바로가기 클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내려받기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② 국세청 주업종코드

국세청 로그인
(MY홈텍스)

화면하단 '우편물/기타세무
정보' 내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클릭

조회화면의
'상세보기' 클릭

주업종코드 확인

5

사업 신청 시 아이템명은 무엇을 쓰나요?

답변

☞ 사업 아이টে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과제명(창업아이টে명)은 창업 아이টে(제품)이 한눈에 표현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하는 항목이며, 지원사업명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 OO기술이 적용된 OO기능의(혜택을 제공하는) OO제품·서비스

6

사업 신청 시, 아이টে이 기술 간 융복합으로 인해 단일 기술 분야를 선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전문기술분야]에서 신청하고자 하시는 창업아이টে(사업)과 가장 근접한 기술 분야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 신청 시 인력정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 ☞ 소속 직원들의 K-스타트업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어야 인력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주요 직원들 위주로 입력 하시면 됩니다.
- ☞ 또한, 소속 직원이 없으신 경우 공란으로 두시고, 저장 → 제출 완료를 클릭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 인력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평가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8

개명한 이름으로 실명인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화면에 표시된 이름이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위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실명인증을 연계하는 SCI평가정보(1577-1006)으로 유선 연락하여 시스템에 개명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정정요청하여 정정이 완료된 이후에 실명인증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실명인증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9

협업하고 싶은 대기업이 2개 이상인데, 대기업은 1개만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 ☞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협업하고자 하는 **대기업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대기업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10

주관기관은 1개만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 ☞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선택한 **협업하고자 하는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주관기관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11

사업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대기업 또는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대기업(주관기관)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주관기관) 선택 시 모집공고와 함께 게시된 별첨자료(대기업,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사업 신청 기간 중 주관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 주관기관 변경은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 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 (참고)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의 신청 주관기관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K-Startup 누리집 접수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13

사업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답변

☞ 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해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문의는 모집 공고문에 기재된 유선 또는 K-스타트업 상담하기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시스템 문의 : 유선전화 — 1357번 — 4번(K-Startup 창업사업) — 1번(창업사업 문의) — 2번(전산문의)
카카오톡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검색

14

K-스타트업에서 상담하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 K-스타트업 접속 후,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신청자가 직접 글을 작성하면,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 사항

* 경로 : K-Startup — 고객센터 — 상담하기 — 상담신청 — 등록

15

**사업 지원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해당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답변

☞ 주관기관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별 사업설명회 일정과 장소 등은 모집공고문 내 기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

사업 신청과 관련한 시스템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K-스타트업 누리집 접속 후 고객센터에 있는 온라인 매뉴얼 탭에서 「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PMS) 사용자 매뉴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참고) 사업 신청 전, 시스템(PMS) 이용 매뉴얼 숙지를 권장드립니다.

참고 사항

* 경로 : K-Startup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 — 매뉴얼 다운로드

17

본 사업의 절차, 운영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답변

☞ K-스타트업 누리집(홈페이지) 접속 후 고객센터-자료실 탭에서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3차 개정)」(‘25.2.7 게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전 지침에 명시된 창업기업 의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경로 : K-Startup — 고객센터 — 자료실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13차 개정)’ 다운로드

18

기업인증이 무엇인가요? 신청접수 마감일에 바로 할 수 있나요?

답변

☞ 기업인증은 기업의 개인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와 상호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기관은 ①공동인증서(기업용) 인증, ②SCI기업실명인증, ③국세청사업자확인, ④금융인증서인증 중 1개의 방법을 택하여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인증해야 합니다.

* (참고) SCI 기업실명인증의 경우, 등록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접수 마감일 이전에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SCI 기업 실명인증 방법 >

① 사이렌24(www.siren24.com) 접속 후, 회원가입

* (기업 실명등록 안내) 고객지원센터(상단 우측) - 실명등록센터(좌측) - '기업 실명등록 안내' 페이지 참조

②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 각 1부 준비

*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 고객지원센터 - 실명등록센터 - 기업 실명등록 안내 페이지의 '기업정보업데이트 요청서' 배너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가능

③ 02-6209-3029으로 FAX 발송

* (등록센터 운영시간) 09:00~18:00(월~금), 토·일·공휴일 휴무

** (등록센터 문의번호) ☎ 02-3279-6500 (SCI평가정보 등록문의), ☎ 1577-1006(SCI평가정보 고객센터)

19

기업인증 시, 신청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기업인증은 개인의 인증서가 아닌 기업용 공동인증서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인증'을 공동인증서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신청접수 마감일 전 기업용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

기업인증 시, 금융인증서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요?

답변

☞ 금융인증서 인증이 실패할 경우, 먼저 PMS에 등록된 기업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일치 여부 확인 후에도 인증이 실패할 경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인데 기관명만 변경된 경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 K-스타트업 접속 후, 화면의 우측상단에 My 버튼 → 기관(기업)정보관리에서 기업(기관)명 변경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기업의 기관명, 사업자번호, 설립일자, 대표자가 모두 일치하여야 기업명 인증이 가능합니다. 기업(기관)명 인증에 성공할 경우 기업(기관)명 및 설립 일자가 변경되며, 국세청 사업자 인증일시가 갱신됩니다.

참고 사항

* 경로 : K-스타트업 접속 > 사업신청 관리 > MY-기업(기관) 정보관리 > 나의 기업정보 > 기업명 변경 > 기업(기관)명 인증

22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잘못 등록하여 수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사업자번호 및 법인번호는 비활성화 항목으로 임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연결하여 수정할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3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있는 경우 두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할 예정입니다.

24

창업도약패키지 모집공고문에 작성된 모든 유형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 ①일반형, ②대기업 협업형, ③투자병행형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상기 ①, ②, ③유형 중 **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

현재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유무를 확인하므로 공고일 이후 전액 변제하여도 사업 신청은 불가합니다.

* (참고) 임금 체불사업주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경로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명단공개 - 체불사업주명단조회

2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채무의 경우, 신청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마감일('25.3.13.)까지 아래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제외 대상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제외 대상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3 **공동대표(A대표, B대표) 중 A 대표자가 국세 체납 중입니다.
B 대표자로 사업 신청 시 요건검토를 통과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검토' 단계에서 공동(각자)대표, 전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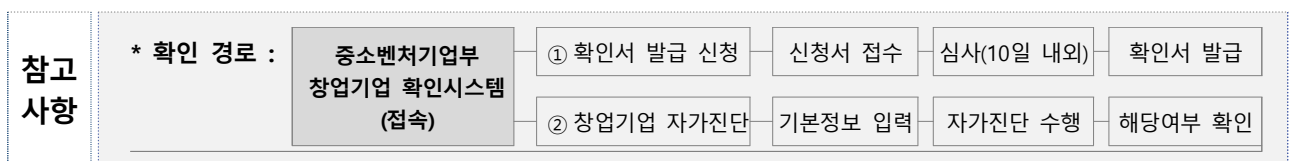
4 **신규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과 창업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기업 신청 자격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창업 여부는 모집공고 안의 붙임파일인 「창업여부 기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창업기업 확인시스템(확인서 발급,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6 **사업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답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외 사업신청자격 세부정보는 모집 공고문의 신청 자격 및 요건 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외국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거소증 등)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시 실명 인증이 가능합니다.

8

국외 창업기업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단, 국외 창업기업의 업력이 공고일 기준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으로 국외 창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 사업적 연관성*을 가진 국내법인(외국법인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을 보유하거나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내 사업자를 활용하여 K-스타트업에서 사업신청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9조(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 ① 국내 법인과 그 법인이 국외 창업한 외국법인 상호간에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
- ②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 고용

**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둔

☞ 국외 창업의 경우, 사업에 신청·선정한 국내 법인·영업소에서 해외 법인(본점)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지원금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됩니다.

참고 사항

* 국외창업 요건

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②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9

현재 R&D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창업지원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신청과 수행이 가능합니다.

10	과거 해당 사업에 신청하였고,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과거의 사업 신청 이력이나 탈락 사실이 사업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	과거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았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2	공고문의 신청 제외 대상에서 명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 지원사업 목록은 공고문 내 [붙임5]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확인 경로 : K-startup 누리집(홈페이지) 접속 사업소개 클릭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참고
13	본 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 00대학교의 겸직 인력입니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14 창업지원사업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다만, 협약 기간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동시수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한 경우, 먼저 선정된 사업의 최종 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약체결 확약서(최종선정시 개별안내 예정)"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은 선정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등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15 '24년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중입니다. 협약 기간 종료일이 25.7.25.인 경우 사업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2025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2개 이상 사업의 동시 수행이 불가하나, 이전년도(2024년 이전)에 선정된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협약 잔여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1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한글 문서(HWP)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워드(Microsoft Word)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공고문과 함께 안내드린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전년도 사업계획서, 타 사업 사업계획서, PPT 양식의 사업계획서 등은 제출 불가하며,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2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나요?

답변	☞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은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해야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 (30MB)이 제한됨에 따라 최대 업로드 용량 이내에서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

3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한글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 <u>가능합니다</u>. 한글(HWP) 파일이나 워드(Microsoft Word)로 제출해도 PDF 형식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	---

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

답변	☞ 사진, 표, 그래프 등 모두 삽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30MB)이 제한되어 있으니 고화질의 사진을 과도하게 삽입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

5 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 <u>불가합니다</u>.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u>유형별 사업계획서 양식이 다르므로 해당 유형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u>. 사업계획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모집 공고문과 함께 안내드린 사업계획서의 목차, 세부 항목을 임의로 변경 및 삭제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6

가점 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가점 대상자일 경우, K-스타트업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한 사업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집 마감일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 가점 세부 항목은 본 모집공고 상의 '평가 및 선정'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 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 전 집행한 인건비를 협약체결 이후 소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사업화 자금은 **협약 기간 내** 주관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사업비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사업비 집행 비목 중 비목 간의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비목 간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4 사무실의 서랍, 책상 등을 사업비로 구매가능한가요?

답변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단, 시제품을 개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제작하는 비용 등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5 정부지원사업비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협약체결 이후에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존, 신규고용 인력 모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대표자는 과제 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 가능하고 사업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6

사업 수행 후 정부지원사업비가 남는 경우 회사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사업비는 협약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협약종료 후에는 잔여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7

대표자의 자녀 인건비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8

제품 광고비를 사업비로 집행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협약 기간 내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등은 집행 가능합니다.

9

총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답변

☞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로 구성되며, 창업기업은 총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자기부담사업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10

자기부담사업비가 무엇인가요?

답변

☞ 자기부담사업비는 총 사업비에서 창업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현금(총 사업비의 10% 이상) 및 현물(총 사업비의 20% 이하)을 말합니다. 이 중 현물은 인건비(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보유자재 등으로 부담이 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11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부담을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창업기업의 부채 및 이자 상환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 (참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43조(사업비 집행)

12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창업도약패키지 및 타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가 · 선정]

1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변

☞ 서류평가, 발표평가 결과는 단계별 평가 종료 후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신 주관기관에서 개별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를 드립니다.

참고 사항

* 평가절차 :

① 요건검토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

② 서류평가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③ 발표평가
발표 및
토의(질의응답)

④ 최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확정

2 서류평가 결과 발표 후, 발표평가 준비 기간은 얼마나 부여되나요?

답변

☞ 서류평가 결과 발표 후, 발표평가 준비 기간을 7일 내외 범위에서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표 자료(PPT 등), 발표평가 일정 등은 발표평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3 정부지원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 정부지원사업비는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창업기업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하신 사업비를 초과하여 최종 사업비가 배정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 사업계획서 수정은 불가합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발표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평가는 누가하나요?

답변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검증한 기술·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 중 사업을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분과별 평가위원을 위촉합니다. 또한 선정평가 가이드에 따라 다수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합니다.

6 평가 기준이 있나요?

답변

☞ 평가는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고문의 '평가 및 선정'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대표자가 부재중인 경우, 발표평가에 타 직원이 대신 발표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대리평가 방지를 위해 평가 전 인적사항 확인 및 신분증 얼굴 대조 등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특허 등 핵심기술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 등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요?

답변

☞ 평가를 시작하기 전 모든 평가위원은 보안서약을 의무로 작성하며, 주관기관별 평가위원 사전교육, 평가장 내 사진촬영, 사적통화 금지 등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보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9 타 사업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 타 사업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창업도약패키지의 선정절차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

협약체결확약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 ☞ 협약체결확약서는 최종 선정 통보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방법 및 제출처는 주관기관을 통해 최종 선정 통보 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1

최종선정 통보 후 ‘협약체결 확약서’ 를 제출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어떤 서류인가요?

답변

- ☞ ‘협약체결 확약서’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써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은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 요청일(발송일 기준)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선정자 대상 메일 또는 문자 안내 예정

- ☞ 이때,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 제출한 협약체결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